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 영업비밀

글 | 강백용 _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bykang@sechanglaw.com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27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동법에서의 ‘산업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등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년 9월 23일 선고 2002다60610 판결).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발명이 있는 경우 발명자는 이를 특허로 출원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특허법이 부여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그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



한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년 2월 15일 선고 2005도6223 판결). 왜냐 하면,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의 정보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아니나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백색 발광다이오드 제조를 위한 부품, 원료의 배합 비율 및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자료뿐 아니라, 피해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 판결은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 관리 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

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영업비밀 보호기간 1년으로 판결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개인의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다24528 판결). 위 판결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3년으로 본 반면, 대법원 2003년 7월 16일 선고 2002마4380 판결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보았다.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법은 보호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업무관련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기밀자료로 특별 관리하거나, 그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들이 시급하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구 철도청,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과 다수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